

등록번호	청소행정과-6283
등록일자	2015.3.24.
결재일자	2015.3.2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주무관	음식물관리팀장	청소행정과장	환경도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세정	김응식	오문식	오제성	조인동	03/25 문석진
협 조	정책기획담당관 代유병선 규제개혁팀장 김정현 주무관 김오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업비
	기관·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3조	정책기획담당관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행정규제 및 법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원안동의 원안동의	

서 대 문 구

청소행정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계획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폐기물관리법」등 상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처리비용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실화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감량 유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I 추진 근거

-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2012.11월. 환경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체계 개선 및 업무매뉴얼
(서울시 생활환경과-15862, 2014.11.12.)
-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 요청(서울시 생활환경과-18311, 2015.01.05.)
- 2015. 서대문구 청소행정 주요정책 개선 계획(2015.03.03.)

II 개정 사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의 상위 근거법령에 대한 조문 수정
-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맞게 수수료를 책정하여 자치구 간 가격 형평성을 유지
-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른 적정 수수료 인상으로 처리비용 현실화 추진

III

주요 개정내용

폐기물관리법령 개정사항 반영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 및 평가 규정’ 신설(안제5조)
- 동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별지서식에 따라 조례 별지서식 정비
(별지 제1호, 제1호의 2,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서식)
-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별표 2)

서울시 종량제 수수료 가이드라인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용 단계적 인상(제9조 2항 관련 별표 3)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수수료 인상안

구분	용량	인상안	
		1단계(2015)	2단계(2017)
단독주택	1ℓ	70	100
	2ℓ	140	200
	3ℓ	210	300
	5ℓ	350	500
	10ℓ	700	1,000
	20ℓ	1,400	2,000
	30ℓ	2,100	3,000
	120ℓ	8,400	12,000
	1kg	100	130
공동주택	1ℓ	70	100
	120ℓ	8,400	12,000
	1kg	100	130
음식점	1ℓ	100	140
	1kg	130	190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지정기준 개선

: 서울시 조례준칙에 의거, 다량배출사업장 범위 지정 시 영업장 면적 외 업태의 특성을 고려한 예외규정 마련(제2조제3호)

IV

추진 일정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 분석평가 등 사전협의	➡	2015. 3.13. 완료
입법예고	➡	2015. 3 ~ 4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사의뢰	➡	2015. 4.16.
서대문구의의회 상정 (제215회 임시회)	➡	2015. 4.30. 한

- 붙임 :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